

■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[별표 2] <개정 2025. 12. 31.>

경력경쟁채용시험등 응시자격구분표(제19조제2항 및 제23조제1항 관련)

임용예정분야	응시자격
소방분야	소방기술사, 소방시설관리사, 소방설비기사·소방설비산업기사(기계분야), 소방설비기사·소방설비산업기사(전기분야)
구급분야	응급구조사(1급·2급), 간호사, 의사
화학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화학 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
기계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기계 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
건축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건축 중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
전기·전자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전기·전자 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
정보통신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정보통신 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
안전관리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안전관리 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(소방분야 응시자격은 제외)
소방정·항공분야	「선박직원법」 제4조에 따른 1급 ~ 6급 항해사·기관사, 1급 ~ 4급 운항사, 소형선박 조종사,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잠수기능장·잠수산업기사·잠수기능사, 「항공안전법」 제35조에 따른 운송용 조종사, 사업용 조종사, 항공교통관제사, 항공정비사, 운항관리사, 같은 법 제125조에 따른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을 받은 사람(제1종 및 제2종 무인동력비행장치에 관한 조종자 증명으로 한정한다)
자동차정비분야	「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」 별표 2 「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」 중 자동차 중직무분야 기술사·기능장·기사·산업기사·기능사
자동차운전분야	「도로교통법」 제80조에 따른 제1종 대형면허, 제1종 특수면허

비고: 채용계급

1. 의사: 소방령 이하
2. 기술사, 기능장, 1급 ~ 4급 항해사·기관사·운항사, 운송용 조종사, 사업용 조종사, 항공교통관제사, 항공정비사, 운항관리사: 소방경 이하
3. 기사, 5급 및 6급 항해사·기관사, 소방시설관리사: 소방장 이하
4. 제1종 대형면허, 제1종 특수면허: 소방사
5.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격 외의 자격: 소방교 이하